교원산업체현장연수운영규정

제정 2006. 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대학 전임교원의 산업체현장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교원산업체현장연수'란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장경험이 부족한 교원을 산업체에 파견하여 산업현장의 기술내용과 변화를 습득케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신청자격) 산업체현장연수는 우리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중인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연수산업체의 범위) 연수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학협동 유관업체
2. 학생 현장실습업체
3.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의 중기업 이상의 업체
4. 기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총장이 인정하는 업체

제5조(연수신청) 산업체현장연수를 희망하는 교원은 연수개시 15일전까지 그룹웨어 전자결재 - 산업체현장연수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상신한다.

제6조(연수결과보고) 산업체현장연수를 수료한 교원은 연수결과가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수결과보고서(별첨 연수이수증명서)를 연수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룹웨어 전자결재 - 산업체현장연수결과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상신한다.

제7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교원 산업체현장연수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